

## 성년후견제도 (법-149p '제삼자를 위한 계약' 참조)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이다.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어 채권을 갖고 채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 10조에 따라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이들을 제한능력자로 정의하며, 성년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후견제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후견이 필요한 경우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된다. 피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와 달리,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혼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단독 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컵솔 등의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라도 취소하기 어렵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시에 혼인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회복된 경우 유효한 유언도 가능하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시된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제한적인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성년후견과 달리 법원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해서만 대리권을 가진다. 즉,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탄력적으로 정해진다. 동이가 필요한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동이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피한정후견인이 그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사람에게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한다. 피특정후견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후견의 심판 전후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다만 특정후견인에게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만을 수여한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이다. 반면 임의후견은 법정후견과 달리,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맺는 후견계약이다. 이 계약은 피임의후견인이 미래에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임의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로 체결할 경우에만 후견계약이 유효하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만이 열 수 있다. 이렇게 심판이 열리게 되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이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이후에 피성년후견인은 ①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법정후견에 관한 등기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두 후견등기부에 공시된다.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년후견제도의 여러 경우를 제한능력자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개시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 ③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변화해 온 과정을 정리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④ 성년후견제도의 효과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하고,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밝히고, 성년후견제도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2. 밑글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모두 피후견인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
- ②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달리 동의권을 갖고 있다.
- ③ 임의후견은 특정후견과 같이 후견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 ④ 피특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행위능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더라도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심판을 직접 열 수는 없다.

3.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는 도박중독으로 인해 월급과 재산을 탕진하고, 대출까지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A의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A에 대한 □㉔□후견개시 심판을 신청하였다. A의 후견인 B는 이 심판을 통해 A의 재산을 대신 처분하는 것에 한해서 대리권을 얻게 되었다. 후견인 선임 이후에도 A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소유하던 토지 일부를 B와 가족 몰래 매매하자, 이를 알게 된 B는 ㉕토지 매수자 C를 찾아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C는 B와 친한 동생이었고, 시세보다 싼 값에 계약을 체결한 동생을 위해 이 사건을 눈감아주기로 하였다. C는 A가 남은 토지를 자신에게 모두 팔도록 유도해준다면 B에게 사례비 5,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한 달 뒤 A가 남은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B의 동의를 구하자, B는 C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동의권 행사를 거부하였다.

- ① ㉔에는 '한정'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겠군.
- ② 후견인 B가 있더라도 A의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니겠군.
- ③ ㉕의 상황에서 B 대신 A가 C를 찾아가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군.
- ④ B가 계속해서 A의 토지 증여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A는 후견종료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군.
- ⑤ 이후 A가 도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후견종료의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겠군.

4. ㉕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년후견인의 동의만 있다면 어떠한 계약이던 스스로 맺을 수 있게 된다.
- ②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구매할 때도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이후 필요하다면 임의후견인을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 ④ 행위능력을 회복했다라도 유언을 할 수는 없다.
- ⑤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